

### 3. 檢討報告 要旨

본 폐지조례(안)은 1984. 7. 12. 시정홍보 및 대민봉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대시민 홍보여건 변화등으로 '8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협의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대시민홍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방안 개발등 대시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質疑 및 答辯

- 없음

### 5. 討論事項

- 없음

### 6. 審查結果

- 원안가결(전원 찬성)

## 대구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1. 폐지사유

-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 홍보방안의 개발·조정·시행으로 시정시책과 대민봉사행정을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984. 7. 12. 대구직할시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 '87년이후 언론 자유화 조치로 신문, 방송사보등의 대시민 창구 다양화로 시민홍보 여건 호전과
- '89년 공보관실 직제 확대로 인한 자체 홍보대책 수립 및 국민홍보위원회으로 하여금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
- 또한 다른 협의회 및 위원회 등에서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 주기능인 유관기관, 단체 상호간 홍보활동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 예산상의 불필요한 낭비와 위원들의 참여기피를 초래하는 대구직할시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고 운영실적도 거의 없어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함.

## 2. 폐지조례안

### 대구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 폐지조례

대구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기타 참고자료

### 가. 폐지조례

#### 대구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

[제정 1984. 7. 12 조례 제1818호]

개정 1987. 4. 9 조례 제2096호

1988. 2. 5 조례 제2179호

1989. 7. 1 조례 제2385호

1992. 1. 15 조례 제2689호

제1조(목적)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홍보방안의 개발 조정시행으로 시정 시책과 대민봉사행정을 보다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역홍보종합대책협의 수립
2. 시기별 역점 홍보사항의 추진방향 협의
3. 유관기관, 단체 상호간의 홍보협조
4. 홍보활동의 평가·분석
5. 기타 홍보활동에 관한 문제점 협의 및 개선대책 수립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준하는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 언론기관의 간부
2. 시 본청 실·국 주무과장

3. 시 교육청 공보관

4. 대구지방경찰청 공보담당관

5. 시 홍보위원 대표

6. 지방단위 유관기관장, 직능단체 대표

7. 기타 대민 홍보에 관한 조례가 짚은 인사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례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 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계장이 된다.

제7조(수당) 협의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상임위원 위촉) ① 시에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지방행정에 식견이 높고 활동력이 있는 자

2. 다년간 대민홍보업무와 관련된 경력소지자로서 홍보기법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 자

제9조(상임위원의 대우) 상임위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상임위원의 기능) ① 상임위원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민홍보기법 개발연구

2. 유관기관의 대민홍보활동 지원

3. 지역단위 홍보성과의 분석

4.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② 상임위원은 협의회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보고) 상임위원은 대민홍보기법 개발연구와 활동상황을 매분 기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 홍보대책협의회 운영규정(1982. 5. 18 훈령 제530호)를 폐지한다.

### 부 칙(개정 1987. 4. 9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개정 1988. 2. 5 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개정 1989. 7. 1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개정 1992. 1. 15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 상임위원의 대우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월 수 당	5급 공무원 7호봉 상당 봉급액
기 말 수 당	월급여의 400% 상당액
정 근 수 당	월급여의 100% 상당액
직 무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함.
체 력 단 련 비	월액수당의 150% 상당액
여 비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나. 협의회 운영상황

- 개최방법
  - └ '91년 이전 월2회 개최
  - └ '92년 이후 분기1회

## ○ 운영실적

- '87년 : 1회
- '88년이후 : 미개최

## 다. 상임위원 위촉현황

위 원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위 촉 기 간	비 고
김 찬 호	29. 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도 근무</li> <li>• 대구문화방송 전속작가</li> </ul>	'87. 7. 1 ~ '89. 6. 30	
이 경 호	63.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명대학교 신문 방송학과졸</li> <li>• 현대자동차 근무</li> </ul>	'90. 9. 1 ~ '92. 8. 31	

※ '92. 9. 1이후 미위촉

## 라. 타시·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운영실태

시 도 명	상임위원 위촉	운 영 실 태	비 고
부 산			조례폐지 : '93. 1
인 천			조례폐지 : '93. 4
광 주	위 촉	운영실적 없음	상임위원 위촉기간 만료후 조례 폐지 검토('94. 5)
대 전	"	"	" ('93. 12)
강 원			조례폐지 : '93. 6
경 기	미 위 촉	운영실적 없음	조례폐지 검토중
경 북	"	"	"
경 남			조례폐지 : '93. 5
충 북	위 촉	운영실적 없음	상임위원 위촉기간 만료후 조례 폐지 검토

시 도 명	상임위원 위촉	운 영 실 태	비 고
충 남	미 위 촉	운영실적 없음	조례폐지 검토중
전 북			조례폐지 : '93. 6
전 남			조례폐지 : '92. 10

- 조례폐지 : 부산, 인천, 강원, 경남, 전북, 전남(6개 시·도)
- 조례폐지 검토 : 경기, 경북, 충남(3개 시·도)
- 상임위원 위촉(운영실적 없음) : 광주, 대전, 충북(3개 시·도)

#### 4. 大邱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 1. 審查過程

- 提出日字 : 1993年 8月 26日
- 提出者 : 大邱直轄市長(都市計劃局長)
- 上 程 : 第24回 大邱直轄市議會(臨時會)
  - └ 第1次 建設委員會(9. 8.)上程
  - └ 第1次 建設委員會(9. 8.)議決

##### 2.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者 : 都市計劃局長)

##### 가. 提案理由

- 都市計劃法施行令 改正에 따른 條例改正

##### 나. 主要骨子

- 委員長, 副委員長 各 1人을 包含한 22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
- 委員에 市議會 議員 包含 및 市議員과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數는 全體 委員數의 3분의 2以上으로 함
- 市議會 議員 또는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 可能
- 小委員會의 委員을 3人以上 5人以下에서 5人以上 9人以下로 함

##### 3. 檢討報告要旨

(檢討報告 : 專門委員 具滋東)

- 本 改正條例案은 '92. 7. 1. 都市計劃法施行令 改正에 따라,